「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23.10.5.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합의한「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으로, 금융회사는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 거래를 실행하여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와 금융회사 간 책임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책임분담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제3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명의를 이용하여 권한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와 금융회사 간 합리적인 책임분담 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 사고(「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나목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함과 동시에「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포함하며, 이하 '비대면 금융사고'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기본원칙

제3조(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이용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에 있어서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③ 이 기준은 관련 법규 개정, 관련 제도 개선,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하기 전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④ 이용자가 이 기준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조(입증책임) ① 이용자가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비대면 금융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이용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가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과 손해 발생에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은 금융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제3장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결정

제5조(금융회사의 사고예방노력 판단원칙) 금융회사의 사고예방노력 수준은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이행의 충분성 및 범죄 예방활동(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 등)의 적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다만, 이용자의 피해 발생 거래 종류 및 각 거래에 적용되는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의 과실 판단원칙)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에 있어 이용자의 과실 정도는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등의 제공(누설, 노출, 방치 포함) 과정 및 범위를 감안하여 정한다. 다만, 금융사고 경위, 사기 수법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고 확인절차) ① 금융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사고 발생 및 손해 발생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제출 하도록 요청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비대면 금융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책임비율의 결정) ①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은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의 사고예방노력 수준과 제6조에 따른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은 비대면 금융사고의 특성 및 금융회사의 사고방지 노력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손해액의 확정 등) ① 이용자의 손해액은 제3자의 권한 없는 금융거래로 인해 이용자의 계좌로부터 이체·출금된 후 회수되지 않은 금액에서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환급 절차 등 피해 환급을 위한 기타 절차가 종결된 이후 최종적으로 회수된 금액을 차감하여 확정 한다.

② 금융회사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후 이용자가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환급금 및 타 금융회사로부터 회수·환급·배상 받은 금액을 포함한다)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용자는 해당 초과금액을 금융회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제10조(책임이행보험 등과의 관계) ① 금융회사는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전자금융거래법」제9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이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제11조(위임규정) 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이후 피해가 발생한 사고(송금, 이체 등 계좌내역에 의하여 특정될 수 있는 피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별함)에 대하여 적용한다.